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서 작성을 의무화(대통령령 제32150호, 2021. 11. 23 공포·시행)한 것에 맞추어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12조),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

3. 주요내용

가. 재결신청서 첨부서류(안 제12조제2항)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보상전문기관(안 제43조제6항)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국무조정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조사서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보상전문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 말한다)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생략)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u><신 설></u>	<u>1. 기본조사서</u>
1. ~ 5. (생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보상전문기관은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 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 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9